

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

[대법원 1994. 10. 11. 94누1746]



【판시사항】

가.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나,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·고시 전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

【판결요지】

가.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, 제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의 수용사업 시행권한은 사업인정·고시에 의하여 부여되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·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·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나,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·고시된 후에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고 그때에 비로소 토지수용법에 의한 적법한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. 나.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과 이에 따른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아직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,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업 시행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의요청을 하여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, 당초의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더라도 소유자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인정될 수 없다.

【참조조문】

가.나. 토지수용법 제25조,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, 제12조 제2항 나. 토지수용법 제25조의3

【참조판례】

나. 대법원 1991.10.25. 선고 90누9964 판결(공1991,2851)

【전문】

【원고, 상고인】 은복희

【피고, 피상고인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

【원심판결】 서울고등법원 1993.12.22. 선고 93구10622 판결

【주문】

】

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유】

】 상고이유를 본다.

1. 분묘이장비에 대하여

이 사건 이의재결시 분묘이장비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각 감정이 관계법령상의 계산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,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묘지구입비나 분묘위치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이장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,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분묘이장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논지는 이유 없다.

2.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에 대하여

- (1)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, 제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의 수용사업 시행권한은 사업인정, 고시에 의하여 부여되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, 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,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나,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, 고시된 후에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고 그때에 비로소 토지수용법에 의한 적법한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그리고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과 이에 따른 소유자등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아직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,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업 시행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의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, 당초의 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더라도 소유자 등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(당원 1991.10.25. 선고 90누9964 판결; 1993.7.13. 선고 93누2902 판결; 1993.8.27. 선고 93누9064 판결 등 참조).

- (2)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남편인 정길춘은 1991.1.12. 택지개발계획의 승인, 고시(건설부고시 제5호)후 1991.4.23. 자신이 이 사건 분묘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묘의 이전과 관련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사업시행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 제출하였고, 그 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는 보상요구 또는 절차지연에 대한 항의 등을 하였으나, 피고 부산직할시는 1991.12.28.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, 고시(부산직할시고시 제91-371호)가 있는 후,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1992.4.1.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5.30.까지 이 사건 분묘의 이장비를 수령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협의불성립되자 1992.6.2. 재결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.

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된 바와 같다면 이러한 경우 원고 남편의 재결신청청구가 원고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재결신청청구는 1991.12.28.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, 고시후 적법한 협의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의 것으로서, 그 협의절차 개시후 다시 원고측의 재결신청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의 재결신청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월이 지난 후에 피고 부산직할시가 재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토지

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.

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,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결 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논지도 이유 없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석수(재판장) 정귀호 이돈희(주심) 이임수